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790
----------	-------

발의연월일 : 2026. 7. 7.

발 의 자 : 최수진 · 안철수 · 김은혜  
신성범 · 구자근 · 김정재  
김태규 · 김예지 · 박충권  
강선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조기 소진됨에 따라 선거인의 선거권이 침해된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는 현행법이 투표용지의 작성·송부·인계 등에 대한 기본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투표용지의 작성 수량이 선거관리위원회 재량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고, 투표용지의 위조·변조 가능성 및 잔여투표용지의 유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투표용지 작성의 최대 및 최소 수량을 규정하고, 투표용지의 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며,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작성한 선거관리공무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1조, 제170조, 제243조, 제259조의2 등).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1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제3항·제7항·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인쇄·납품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는”을 “인쇄·납품,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송부 및 잔여투표용지를 폐기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5항에도”를 “제8항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에”를 “제11항에”로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의 수량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가장 높은 비율에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량 이상으로 하되,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투표구별 선거인수 이하가 되어야 한다.

1. 해당 투표구에서 실시된 직전 3회의 동종 선거 중 최고 투표율에 15퍼센트포인트를 더한 비율

2. 직전의 동종 선거의 전국 투표율에 10퍼센트포인트를 더한 비율
3. 최근 인구이동 추세 및 사전투표율 변동 추이를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예상 투표율

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예상 투표율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20일까지 투표용지 작성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작성·송부·보관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고, 제151조제1항후단에 따른 투표용지의 수량을 인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여야 한다.

⑦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구마다 소속 직원 중 투표용지관리관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⑩ 투표용지관리관은 투표용지의 인쇄·납품·송부·보관, 투표관리관에 대한 인계 및 잔여투표용지의 폐기 등의 과정을 관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제17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잔여투표용지를 지체 없이 소각·파쇄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제218조의18제1항 후단 중 “제151조제6항”을 “제151조제11항”으로 한다.

제24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잔여투표용지를 취거·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9조의2(투표용지 등에 관한 죄)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을 포함한다)이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제151조제1항후단의 기준 미만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를 현저히 저해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51조제7항에 따른 기술적 보호조치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 ④ (생 략)

<신 설>

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한 비율

3. 최근 인구이동 추세 및 사전 투표율 변동 추이를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예상 투표율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일 전 120일까지 투표용지 작성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작성·송부·보관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고, 제151조제1항후단에 따른 투표용지의 수량을 인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여야 한다.

④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⑦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







과실로 제151조제1항후단의 기준 미만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를 현저히 저해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51조제7항에 따른 기술적 보호조치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